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2. 12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 정 이 유

- 지방세 징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삭제 함.

3. 참 고 사 항

- 지방세법 제30조의2(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)
- 국세징수법 제87조(국세체납정리위원회)
-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(위원회의 직능)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2항중 “해당하여 지방세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를 “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분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직능) ①위원회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채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	제3조(위원회의 직능) ①----- ----- -----,
②지방세 채납정리위원회 위원장 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1에 <u>해당하여 지방세법 제</u> <u>30조의3</u>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	②----- ----- ----- <u>해당하는 경우에</u> <u>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<u>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</u> <u>를 거쳐야 한다.</u>	
1.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채납액 에 충당된 교부금이 채납액에 부족한 때	1. ----- ----- -----
2. 채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	2. -----
3.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 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	3. ----- -----
4.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한 회사가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	4. ----- ----- -----
5. <u>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징수권</u> <u>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</u>	5. <삭제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